**평가보고서 요약**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작성한 4단계 보고서는 한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2011년도 3단계 평가 이후로 어떠한 발전을 이루었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시행, 법인의 책임, 해외뇌물범죄 적발 등을 비롯하여,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와 과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국의 집행 실적은 3단계 이후로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로 한국에서는 4건의 해외뇌물범죄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소된 다른 2건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4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다. 본 보고서 작성 당시 추가로 2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1건이 재판 진행 중이었다. 부패 위험이 높은 산업분야와 국가들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와 수출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개인, 기업 차원에서 해외뇌물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3단계 이후로, 한국 법 집행기관의 적극적 해외뇌물범죄 적발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뇌물방지작업반은 한국 검찰과 경찰 간의 업무 조정 시스템(사건 배당 및 정보 공유 포함)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뇌물범죄 의심사건 사전 적발 및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자금세탁방지 신고요건, 조세 당국의 신고의무 정의,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교류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적발역량 증진 등)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적발역량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은 해외뇌물죄 의심사건을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게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며, 3단계 이후 이러한 보호가 국내외 신고 모두에 적용되도록 확대되었다. 작업반은 또한 제3자를 통한 뇌물 제공행위의 처벌 공백을 해결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약한 처벌 및 법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뇌물방지작업반은 또한, 수사관, 검사 및 판사가 해외뇌물범죄에 대하여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개념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역 현지관행을 고려하고, “외국공무원”의 정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 등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현행 수사기간 및 법인의 공소시효 또한 효율적인 해외뇌물범죄 수사에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뇌물범죄 수사는 보다 적극적인 형사사법공조의 활용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보고서와 그에 따른 권고안은 핀란드와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 12월 13일에 작업반에 의해 채택되었다. 본 보고서는 심사단의 조사 내용뿐 아니라 한국이 직접 제공한 법제도, 통계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관련 정보는 2018년 7월 심사단이 서울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법 집행, 언론 및 시민 사회 대표자들과 가진 회의에서도 수집하였다. 한국은 법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뇌물범죄 처벌 강화 진행상황을 1년 안에 작업반에 구두보고 할 예정이며, 2년 이내에 모든 권고안의 이행 및 시행 노력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